

의안번호	2220093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계번호	26B35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1)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서 시행되는 사업계획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사업계획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 제44조 제1항²⁾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작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3억 6,270만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1억 2,320만원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3,100만원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사업계획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횟수·규모·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